<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초선마라

『초선마라』 정보공개서

「**초선마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가맹본부: 초선마라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18

「초선마라」 가맹사업본부 「초선마라」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길 94, 1층(번동)		
전화번호	02-6402-3082	**팩스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초선마라 외식사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010-3203-4070
홈페이지	www.준비 중	**담당자 이메일**	choseonfb@naver.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대한 지원

Ⅷ.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지 서류

※ 정보공개서 최초등록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를 통한 검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최초 검색 시 당사의 브랜드가 검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십시오.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초선마라	영업표지		초선마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길 94, 1층(번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3-09-05	강민종	02-6402-3082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672-02-02850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당사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로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특수관계인 및 가맹사업 경영 경험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구분	상호 / 이름	대표자	대표번호
가맹본부	초선마라	-	02-6402-3082
특수관계인 (임원)	※ 당사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입니다. 당사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정보는 해당이 없습니다.	영업표지	주소
		초선마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길 94, 1층(번동)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 합병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합병일	주소	대표자
-	-	-	해당 없음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초선마라』	마라탕/마라샹궈 등 중국식 마라요리 전문 가맹점
상 호	『초선마라』 _____ 점	가맹사업자의 명칭(분류)
상표(서비스표)	초선마라	출원일자: 2023-08-11 출원번호: 4020230145482 등록일자: 2024-09-25 등록번호: 40-2252818

☞ 귀하는 앞으로 위의 영업표지(브랜드)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 당사의 재무상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169,168	-	-

☞ 당사는 2023-09-05 개업된 개인사업자 가맹본부입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당사는 직전 3년간 가맹사업 영위사실이 없습니다. (상기 표의 매출액은 당사의 직영점을 통하여 발생된 매출액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강민종	대표	2023-09-05~현재	초선마라의 대표	가맹사업 총괄

☞ 당사는 2023-09-05 개업된 개인사업자 가맹본부입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직전년도 말 현재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

☞ 당사는 2023-09-05 개업된 개인사업자 가맹본부입니다. 당사의 직원 수 정보는 전년도 연말 12월분 귀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료에 기준(A01 코드)하고 있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은 [초선마라]외의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상표 (서비스표)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 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초선마라	당사 상표, 영업표지 사용 대가 (제43류, 12판)	출원일자: 2023-08-11 등록일자: 2024-09-25	출원번호: 4020230145482 등록번호: 40-2252818	소유자: 강민종	존속기간 만료일: 2034-09-25

☞ 당사의 지식재산권 [초선마라]는 2024-09-25 특허청을 통하여 상표출원 및 등록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안전한 상표사용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당사 상표사용은 약정된 범위와 내용으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약정된 범위와 내용을 벗어난 사용 시에는 관련 법에 의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초선마라』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개시예정(공식 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

※ 『초선마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3-09-05(1호 직영점 번동 본점)

2. 『초선마라』 연혁

☞ 『초선마라』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초선마라	초선마라	강민종	가맹사업 개시예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길 94, 1층(번동)

3. 『초선마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초선마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중식	마라탕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초선마라』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1	-	1
서울	-	-	-	-	-	-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는 2024년 11월부터 공식적인 가맹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가맹사업 진행 이후 변동될 당사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상세한 현황은 당사에 비치될 점포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바로 전 3년간 『초선마라』가맹점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	-	-	-	-	-

※ 당사는 2024년 11월부터 공식적인 가맹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가맹사업 진행 이후 변동될 당사 가맹점의 상세한 현황은 당사에 비치될 점포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초선마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바로 전 3년간 해당 가맹사업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2023]년도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년도 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는 2024년 11월부터 공식적인 가맹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으로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가맹사업 개시 초기에는 직영점의 기존 매출 자료 중심으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는 문서형식으로 제공됩니다._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준수)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중 가맹점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구체화합니다. (가맹점의 실제 전용 면적과 자료 수집 과정에서 확보된 면적 정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 물품공급액, 시장현황, 가맹점주의 경영능력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할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귀하가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초선마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초선마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기간(단위:일)
2023	-	-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은 최초 가맹계약 체결 일자를 기준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영업기간과는 상이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23년 기준
광고	소계	-	-	-	-	-
	TV	-	-	-	-	-
	라디오	-	-	-	-	-

	인터넷	-	-	-	-	-
판촉	소계	-	-	-	-	-
	-	-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말 『초선마라』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지점 또는 담당부서	예치기관의 소재지	예치기관의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경기 양주시 평화로 1565	031-866-3025

2) 가맹금 예치절차

☞ 귀하는 **[중소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 및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해당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는 안내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귀하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초선마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별도 구입비용]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5,500	-	-	-	(예외조건)
가맹비	노하우 대가 90%	3,3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원칙상 반환 불가 금전이나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규정 해당 시 반환 가능 (가맹계약서 제42조 참조)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 및 영업표지 사용 대가는 본 계약의 만료 시 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기간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
	가입비 및 영업 표지 사용 대가 10%					
개점 전 교육비		2,2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원칙상 반환 불가 금전이나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규정 해당 시 반환 가능 (가맹계약서 제42조 참조)	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된 실제비용	개점 전 교육 미 이수 시 반환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2,000	-	-	-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7,500**	**-**
가맹비	**3,3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2,2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없음**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합계	-	**5,500**	-	-	-	**50㎡(15평)기준**
인테리어	☞ 인테리어/간판/주방설비/집기/비품/의·탁자 구성 관련 가맹점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정 업체 지정 없이, 가맹점사업자 자율로 해당 항목 구성 가능함. ☞ 인테리어, 간판, 주방설비, 비품, 의·탁자 구성에 관한 예시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테리어 평당 단가 150~180만 원 2. 간판(전면 3m 기준) 200만 원 3. 주방설비 및 집기 1,100만 원 4. 홀 집기 200만 원 5. 의·탁자 50만 원(배달 중심 매장)			시공 시작 전일	공사 전 계약취소	※ 당사의 경영환경 변화와 협력사 경영환경 변동으로 관련 용역 및 물품, 서비스 공급단가 등은 변동 가능 ※ 초기 선택하지 않은 설비 등은 가맹사업 진행 과정 중으로 추후 선택 가능 ※ 공급 협력사명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간판				간판 주문과 동시	제작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및 집기				발주와 동시	납품 전 계약취소	
홀 집기				발주와 동시	납품 전 계약취소	
의·탁자				발주와 동시	납품 전 계약취소	
포스(POS)	**협력업체**	-(임대설치)	-	협력사 자체 기준	설치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 초도물품	**협력업체**, 1곳 이상 협력업체 (미지정_별도 선정 중)	5,500	-	발주와 동시	납품 전 계약취소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 감독 준수 : 가맹사업은 다수 가맹점에 대한 통일성과 표준성 관리를 가장 중요한 가맹사업 관

리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 통일성 및 표준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 인테리어 시공 시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과 도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가맹점사업자 자율선택) 이때 당사가 마련한 **인테리어 도면을 사용할 경우 평당 일금이십이만원정(₩220,000/ VAT포함)**을 도면사용료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필수 구입 내역 : 장비 및 초도물품 등은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에서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구입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을 귀하가 자체 구입 시에도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사전 당사를 통한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그 밖의 영업 신고, 어닝, 냉난방기, 철거비용, 익스테리어,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설치, 후드실외 배관공사, 가스공사, 오픈행사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 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력업체,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환조건에 따라 반환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19세 이상일 것, 당사 경영이념에 적극 동참할 것
종업원(직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 외 별도시공 및 별도품목 등의 내역은 귀하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 및 당사의 협력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지속 상표사용 및 지속 가맹점 운영관리 대가 (로열티)	가맹본부	2,200 (1년 단위, 일시불 납부)	가맹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분 월 단위 반환	-	조건과 요율 변동 가능
포스(POS)	협력업체	22	계약 시 별도 약관 참고	계약 시 별도 약관 참고	계약 시 별도 약관 참고	임대설치 기준
상품광고 및 홍보비용	가맹본부	광고 분담기준에 의함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광고 및 홍보 미 시행 시	광고비 및 홍보비용으로 사용된 경우	p.30 광고 및 판촉 비용 항목 참고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판촉진행 시 요청될 실제금액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판촉활동 미 진행 시	판촉비로 비용소요	판촉행사 시 협의로 금액 및 세부항목 확정
모바일 상품권	-	해당 없음	-	-	-	-

수수료분담금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실비 지급	-	-	-	보수교육 필요 시
점포환경 개선비용	해당 없음 (자율시공)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40%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참조	-	-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모든 금전 지급 기일 경과 시 / 법정지연이자 적용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	-	-	-
리모델링 비용	-	해당 없음	-	-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점포환경 개선비용 관련 현재는 인테리어 시공을 가맹점사업자 자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특정 업체가 지정되어 관련 내용이 적용될 경우 모든 절차는 가맹사업법 규정을 그대로 준수합니다. (가맹계약서 참고)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귀하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 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 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 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초선마라] 관련 2023.12.31.까지 기준 공식 가맹계약 체결 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에 차액가맹금 발생 정보는 없습니다. (가맹사업과 연관된 필수 원·부재료의 가맹점 공급에 있어서 당사는 관련 물품을 직접 공급하지 않고 3자 물류를 통하여 가맹점이 직접 공급을 받을 예정이기에 당사의 이름을 통한 직접적인 물류마진이라 할 수 있는 차액가맹금 내용은 없겠습니다. 다만 가맹점 확장 등으로 관련 내용이 발생될 경우 해당 내용은 추후 성실하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교육, 통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당사의 직원이 현장을 방문 할 경우 최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의 요청은 서면, E-mail,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초선마라』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통한 청구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양수도 관련 제반행정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7일 이내로 가맹본부의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대여 또는 제공받은 모든 문서를 가맹본부에게 반환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서 파기해야만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제9조[최초 가맹금] 제4항, 제42조[가맹금의 반환] 등에 의하여 최초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등의 사용중단·원상복구를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 가맹점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가맹점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중요 영업정책과 고객정보 등을 당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타 가맹본부 및 타 가맹점에 넘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40조 제1항에 대한 의무불이행

침해일 익일부터 1일당 일금오십만원정(₩500,000)을 지체상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단위: 원)		구분
		상한	하한	
1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가맹사업 초기 단계로 물류 공급에 대한 기본 정보 취합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가맹 상담과 계약 시 관련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별도 자료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초선마라**』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 지정과 경제적 이익 수취 내용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해당 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1) 당사는『**초선마라**』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해당 없음	-	2023년 기준

2) 당사가『**초선마라**』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 지정과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해당 없음	-	2023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지정된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5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선마라 가맹점 판매상품 가격정책(2024.10.01. 기준)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 당사의 가맹사업 [초선마라]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별지 2와 같이 권장되는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관련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마라탕, 마라샹궈 등 중국식 마라요리 전문 가맹사업	초선마라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설정방법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 소재 주소지 기준 반경 (1.5 km) ※ ① 철도 또는 왕복 7차선 이상 도로의 지형물에 의한 상권 구분 시 적용 제외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②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쇼핑몰 등)의 경우 적용 제외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초선마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초선마라**』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가맹사업 확대,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가 발생될 경우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	-	해당 없음
대리점	-	-	
일반소매점	-	-	
기타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가맹사업 확대,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가 발생될 경우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	-	해당 없음
홈쇼핑	-	-	-	
전화권유판매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가맹점과 직영점 판매상품 동일 운영 예정)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초선마라**』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맹계약서 제38조 제1항)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와 대금관련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 규정은 가맹계약서 제39조 제1항에 있습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9조 제2항)
1. '을'이 제3조[거래자의 기본 요건]의 각 항을 위반하는 경우 -. 외식업 가맹사업 관련 필요 사업자등록증 구비와 법률상 필요 요건 미 충족 시 -. 식품위생법 및 기타 법률상 상행위 및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 영업 관련하여 요구하는 신고나 등록업무 미 충족 시

2. '을'이 제11조[로열티]와 제27조[물품 및 상품 대금의 지급] 등 가맹계약상 규정된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3. '을'이 본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공한 첨부 서류의 내용이 고의로 위·변조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
4. '을'이 제23조[영업의 양도] 제1항, 제2항, 제8항, 제9항 등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차, 또는 질권 설정한 경우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상표권과 가맹사업 관련 권리가 양도양수 시 그대로 이전되기에 관련 내용 발생 시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5. '을'의 '갑'에 대한 채무액 및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제10조[계약이행보증금]에서 규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6. '을'이 제38조[계약의 갱신]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시스템, 디자인, 영업표지, 인테리어 등이 변경된 경우 관련 내용은 갱신 전 미리 교체 및 수리되어야만 합니다.
-. 고객 안전을 위하여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는 갱신 전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 가맹본부와의 금융상 모든 채무는 갱신 전 반드시 변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 갱신의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이익을 지키는 과정으로 반드시 당사 방문을 통하여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7. '을'이 제35조['을'의 의무]에 규정된 각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 영업비밀 유지와 경업금지 위반 / 가맹사업 관련 핵심 자료 무단 사용 및 유통
-. 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 가맹점 매출자료 미 제공과 가맹본부 경영정책 수립 비협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운영 지침 미 준수(물품, 상품,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운영 지침)
-. 가맹사업 동일성 구축을 위한 교육과 훈련 미 참여 / 매출자료 허위 제공 / 가맹사업 명성 회손
-. 가맹사업 관련 각종 대금지급 의무 지연 등 총 14개 조항
※일반 해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가맹계약 희망 시 사전 제공될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9조 제3항)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

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및 위탁 등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및 귀하가 제3자로 하여금 [초선마라]와 동일한 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규정은 계약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최장 1년간 현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으로의 경업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마라탕, 마라샹궈 등 중국식 마라요리 전문 업종	당사는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수	비고
오전10:00 ~ 오후24:00	주 6일 이상(매월 26일 이상)	전체 가맹점은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 휴업 불가
본점은 08:00~익일 새벽 03까지 운영 중	본점은 연중무휴 영업 중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2명	직접 근무	약 50㎡(15평) 기준

☞ 위의 내용은 안전하고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한 기본 권장 사항입니다. 지역별 상권과 영업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정책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및 홍보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당사의 광고기획안 전달 →가맹점사업자 분담비율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상품광고 시 비용 부담은 가맹점 사업자간 균등비율로 부담 (가맹계약서 제21조 참조)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 (해당없음		
	가맹점 개별광고 (직접 SNS마케팅 등)	- (해당없음)	**총 광고비의 100%**		
판촉 전체 행사	판촉행사	-.판촉관련 내용과 분담비율은 행사 전 협의로 결정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제작은 가맹점사업자가 100% 부담 -.가맹점사업가가 직접 판매하는		당사의 판촉기획안 전달 →가맹점사업자와 주요 내용 협의로 분담비율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공동판촉과 개별판촉에 따라 비용 분담비율 별도 산정 (가맹계약서

		상품의 할인비용과 직접 제공 경품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100% 부담(판촉관련 물품의 디자인 요소와 제작기준은 당사의 허가 및 배포 기준 동참 필요)		제22조 참조)
	할인카드·멤버십·제휴서비스	- (해당없음)		

※ 2022년 07월 0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광고 100분의 50 / 판촉행사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광고와 판촉행사 등은 당사와 귀하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 당사의 광고 관련 비용 분담기준은 전국 광고 기준이며 지역 단위 광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광고 비용 분담액은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비율로 합니다. (지역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관련 정책은 당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최장 1년간** 당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점포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운영교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가맹계약서 제44조)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구축을 위한 사입금지(자점매입)규정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이 해지 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일금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또는 해지 1년간 영업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일금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혹은 일방적인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일금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40조 제1항에 대한 의무불이행 침해일 익일부터 1일당 일금오십만원정(₩500,000)을 지체상금으로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만약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가맹점 개점이전에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최초 가맹금에서 일금이백만원정(₩2,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사입행위(자점매입)을 할 경우 1회 경고조치, 2회 벌금 일금일백만원정(₩1,000,000), 3회 위반 시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으로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숙지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15평) 기준 /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40일 내외	Ⅳ.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 번 항목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3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는 가맹점 관련 대부분의 준비항목을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고 있기에 실제 소요기간은 예시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ㆍ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현재는 인테리어 관련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으나 향후 가맹점 확장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정이 발생될 경우 점포환경개선 관련 모든 내용은 가맹사업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예정입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당사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 부담	문의: 초선마라 외식사업부 02-6402-3082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초선마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초선마라**]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별도의 경영상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사업 경영 초기로 아직 관련 지원 결정 내용은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업교육	회사소개, 조리 및 상품 교육, 실질적인 점포 운영 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7일전	필수
운영교육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증대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특별교육	신 메뉴 교육, 보수교육, 영업방침의 변경사항 교육, 시정명령에 따른 소집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업교육	최소 7일~최대 14일	2,200	교육관련 내용 사전 서면 통지
운영교육	추후 공지(2일 예정)	실비 지급	교육 필요 시 사전 서면 통지
특별교육	추후 공지(1일 예정)	실비 지급	교육 필요 시 사전 서면 통지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초선마라 번동 본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길 94, 1층(번동)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개월 26일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해당 없음	전년도 연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권장 기준 실제 영업 개월 수 6개월 미만으로 산정 배제함.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초선마라 외식사업부(02-6402-308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 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초선마라 가맹점운영 필수공급 원 · 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의 가맹점운영 필수 공급 원 · 부재료 내역은 당사의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관련 단가 등 세부적인 내역은 가맹상담 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별지 2] 초선마라 가맹점 판매상품 가격정책

판매상품명	가 격(원)
초선 대표 마라탕	1인분: 11,900원 2인분: 21,900원
셀프 마라탕	100g 당 1,900원
불맛 으뜸 대표 마라샹궈	1인분: 16,900원 2인분: 31,900원
셀프 마라샹궈	50g 당 1,900원
꿔바로우	소: 7,900원 중: 14,900원 대: 18,900원
계란볶음밥	1인분: 7,900원 2인분: 13,900원

「당사의 가맹점 판매상품 가격정책은 당사의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가맹상담 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별지 3_1] 초선마라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 내역/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유의사항

인테리어공사를 자율로 선택하여 가맹희망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콘셉트(도면)는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사업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이 공사현장으로 파견되어 관리와 감독 및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물품공급 관련 협력사는 당사와 협력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전으로 정확한 협력사 이름을 사전 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별지 3_2] 초선마라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 내역/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4] 초선마라 가맹점 내부 인테리어 평면도

[별지 5_1] 정보공개서 수령 자필확인서(가맹희망자 보관용)

가맹희망자의 수령 자필확인서

본인(가맹희망자)은 가맹본부(**초선마라**)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확약한다.([ ]안 자필작성)

① 「**초선마라**」가 가맹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일시** : 20 년 월 일

② 「**초선마라**」가 가맹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장소** : _____

③ 가맹희망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성 명:_____

주 소:_____

연락처:_____

④ 「**초선마라**」가 정보공개서를 작성(수정/등록)한 일자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⑤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⑥ 정보공개서의 제공 사실 : 아래사항 중 제공 방법을 선택하여 (○) 표시한다.

- ( ) 직접 제공함
- ( ) 전자우편으로 송부함(전자우편 주소 : _____)

⑦ 가맹계약자 _____는 「**초선마라**」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그 내용과 사용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 「**초선마라**」의 정보공개서의 사용 용도를 「**초선마라**」의 가맹사업계약에 관한 검토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초선마라**」의 정보공개서를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정보공개서상의 제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서의 사용과 타인에게의 양도로 인하여 「**초선마라**」의 가맹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을> 가맹희망자

성 명: _____(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번호: _____

주 소: _____

<갑> 가맹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길 94, 1층(번동)

상 호 : 초선마라

대 표 : 강민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별지 5_2] 정보공개서 수령 자필확인서(가맹본부 보관용)

가맹희망자의 수령 자필확인서

본인(가맹희망자)은 가맹본부(**초선마라**)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확약한다.([ ]안 자필작성)

① 「**초선마라**」가 가맹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일시** : 20 년 월 일

② 「**초선마라**」가 가맹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장소** : _____

③ 가맹희망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성 명:_____

주 소:_____

연락처:_____

④ 「**초선마라**」가 정보공개서를 작성(수정/등록)한 일자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⑤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⑥ 정보공개서의 제공 사실 : 아래사항 중 제공 방법을 선택하여 (○) 표시한다.

- ( ) 직접 제공함
- ( ) 전자우편으로 송부함(전자우편 주소 : _____)

⑦ 가맹계약자 _____는 「**초선마라**」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그 내용과 사용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 「**초선마라**」의 정보공개서의 사용 용도를 「**초선마라**」의 가맹사업계약에 관한 검토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초선마라**」의 정보공개서를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정보공개서상의 제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서의 사용과 타인에게의 양도로 인하여 「**초선마라**」의 가맹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을> 가맹희망자

성 명: _____(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번호: _____

주 소: _____

<갑> 가맹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길 94, 1층(번동)

상 호 : 초선마라

대 표 : 강민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별지 6]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를 작성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초선마라]　　대표　　강민종　(인)

가맹희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7] 가맹본부 재무자료_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